

3. 機械式 駐車場 設置基準에 관한 規程

交通部告示 第91-31號

제 1 조(목적) 이 고시는 주차장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계식주차장(이하 “주차장”이라 한다)의 구조 및 설비에 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주차장의 종류) 규칙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규칙 제6조제1항에서 정하는 노외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주차장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수직순환식주차장: 주차용에 공하는 부분(이하 “주차구획”이라 한다)에 자동차를 입차시킨 후 그 주차구획을 수직으로 순환이동케 하여 자동차를 주차시키는 형식
2. 수평순환식주차장: 주차구획에 자동차를 입차시킨 후 그 주차구획을 수평으로 순환이동케 하여 자동차를 주차시키는 형식
3. 다층순환식주차장: 주차구획에 자

동차를 입차시킨 후 그 주차구획을 다층으로 된 공간에 상하 및 수평으로 순환이동케 하여 자동차를 주차시키는 형식

4. 2단식주차장: 2단으로 배치되어 있는 고정된 주차구획에 승강장치에 의하여 자동차를 주차시키는 형식
5. 승강기식주차장: 다층으로 배치되어 있는 고정된 주차구획에 승강기에 의하여 자동차를 자동으로 운반이동케 하여 주차시키는 형식
6. 승강기슬라이드식주차장: 제5호에 규정된 승강기식주차장의 승강기가 승강과 동시에 수평으로 이동하는 형식
7. 평면왕복식주차장: 평면으로 배치되어 있는 고정된 주차구획에 운반장치에 의하여 자동차를 운반이동케 하여 주차시키는 형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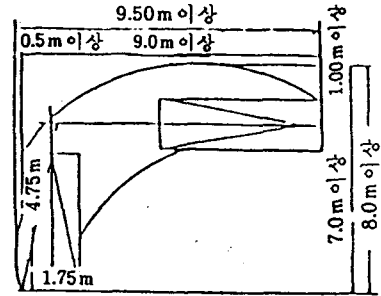
제 3 조(주차대상 자동차) 주차장에 주차할 수 있는 자동차는 주차장법 제2조

제3호에 규정된 자동차중 특수자동차를 제외한 자동차로 하며 각 주차장별 주차차량의 규격은 다음 각호에 규정된 규모 이하이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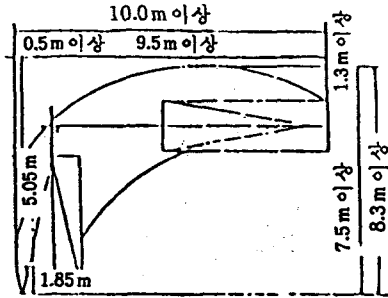
1. 소형자동차주차장: 길이 4.75미터× 폭 1.75미터×높이 1.60미터 이하
2. 중형자동차주차장: 길이 5.05미터× 폭 1.85미터×높이 1.60미터 이하
3. 대형자동차주차장: 길이 5.75미터× 폭 2.05미터×높이 1.65미터 이하

제 4 조(주차장 출입구의 전면공지) ①출입구가 직접 도로와 접하지 아니하는 주차장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주차장으로 출입하는 차로(이하 “진입로”라 한다)와 주차장 출입구에 대한 자동차 회전각도를 90도 기준으로 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주차장 출입구와 접속된 전면부분에 자동차의 회전을 위한 공지를 확보하여야 하며 자동차 회전각도가 90도 이상인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전면공지를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 회전각도가 90도 이하인 경우 및 출입구가 직접도로와 접하고 출구와 입구가 분리되지 않은 경우에는 자동차의 회전을 위해 방향전환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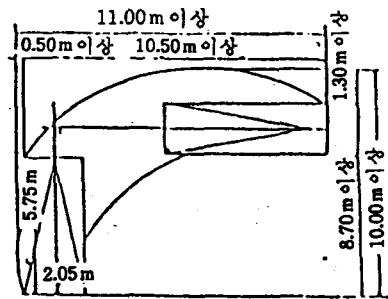
1. 소형자동차주차장



2. 중형자동차주차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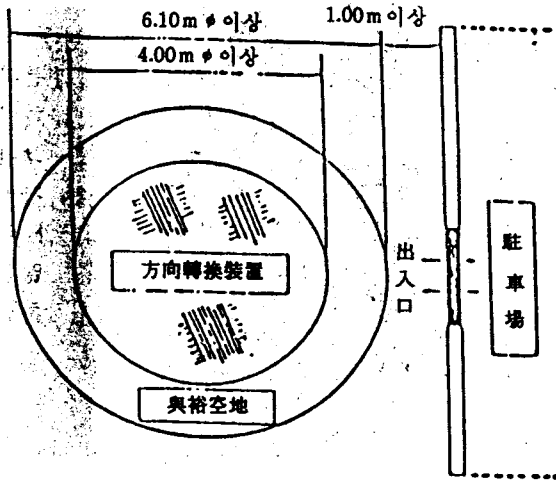
3. 대형자동차주차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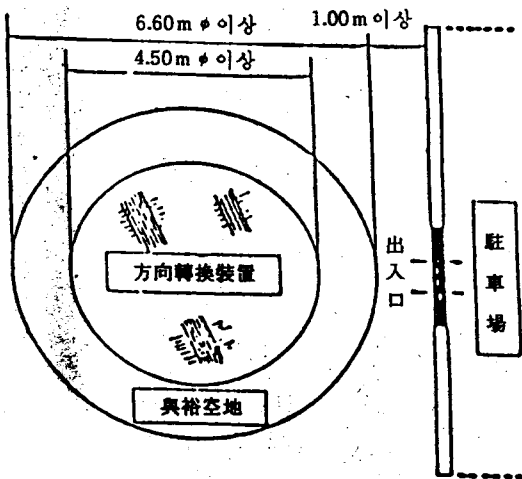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면공지에 대체하여 자동차 회전을 위한 방향전환장치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및 자동차 회전각도가 90도 이하로서 방향전환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의 전면공지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중형자동차주차장

(소형자동차주차장을 포함한다.)



2. 대형자동차주차장



③주차장의 형태가 2단식인 경우의 전면공지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규칙 제6조제1항제3호 내지 제4호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제 5 조(주차대기를 위한 정류장) ①주차장의 기능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주차장의 전면공지나 진입로와 접하는 장소 또는 출입구와 도로가 접속되는 장

소에 자동차가 주차장의 이용을 위하여 대기할 수 있는 장소(이하 “정류소”라 한다)를 확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류장은 자동차 수용대수 20대당 1대분의 비율로 확보하여야 하며 자동차 1대분의 정류장 규모는 제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주차장의 출입구가 따로 설치되어 있거나 전면도로에서부터 주차장 출입구까지 폭 6미터 이상의 진입로로 연결되어 있을 경우 진입로 길이 6미터당 1대분의 대기공간을 확보한 것으로 본다.

제 6 조(차로) ①주차구획을 순환이동케 하거나 승강기등 주차구획에 자동차를 운반이동케 하여 이동 또는 운반이동을 위하여 설치하는 장치에 대하여는 이를 규칙 제6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차로로 본다.

②승강기를 이용하는 기계식주차장으로서 평면상에 대량으로 병렬주차를 하는 경우 또는 자주식 주차장으로서 자동차용 승강기를 이용하여 주차장까지 자동차를 이동하는 경우에는 수용자동차 대수 30대당 1기 이상의 승강기를 확보하여야 한다.

③전항에 의한 자동차용 승강기를 설치한 경우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전면공지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대기공간

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 7 조(주차구획) ①자동차 1대에 대한 주차구획의 바닥면적은 제3조 각호에 규정한 소형자동차 주차장, 중형자동차 주차장 및 대형자동차주차장에 주차하는 기준자동차의 규격을 감안하여 자동차의 원활한 주차에 지장이 없는 규모로 하여야 한다.

②주차구획의 바닥과 주차공간 상단부의 거리는 제3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자동차의 규격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제 8 조(비상시설 등) ①전동기에 의하여 작동하는 주차장에 대하여는 정전 또는 고장등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여 자가발전시설 또는 수동에 의하여 조작할 수 있는 시설 등 비상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주차구획을 동일한 장소에 수직으로 중복배치하는 주차장으로서 운전자가 직접 승입하는 주차장인 경우에는 운전자가 최종으로 도착하는 지점에서 지상까지 피난계단 또는 피난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 9 조(환기장치 등) ①주차장의 구조가 시설물로서 자동차의 운전자가 승입하는 부분의 일산화탄소의 농도는 규칙 제6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다.

②주차장 이용자가 자동차를 보관하기

위하여 운전자가 주차장에 승입하는 경우 당해 부분의 조도는 규칙 제6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다.

제10조(주차 전용건축물) 주차전용으로 사용할 건축물(이하 “주차전용 건축물”이라 한다)을 건축할 때에는 당해 건축물 주변의 환경과 도시미관을 저해하지 아니하도록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1. 주차 전용건축물을 기존 건축물에 부착하여 건축하는 경우에는 그 부착면의 폭은 당해 기존건축물의 부착면 외벽 폭을 초과할 수 없다.
2. 주차 전용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재료 및 색채는 주변의 환경과 조화되어야 한다.

제11조(외부에 노출되는 주차장의 설치) 수평순환식주차장, 평면왕복식주차장 또는 2단식주차장으로서 당해 주차장에 주차한 자동차가 외부에 노출되고 도로와 접하는 경우에는 그 도로와 접한 부분중 주차장 출입구를 제외한 부분에 대하여는 울타리 또는 적절한 조정시설 등의 경계시설을 하여야 한다.

제12조(건축물에 부설하는 주차장의 기준 등) ①시설물에 부설하는 주차장을 기계식주차장으로 하는 경우에는 제2조 내지 제11조의 규정을 준

용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영 제6조 규정에 의한 주차장 설치기준 또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의 부설명령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하는 주차장의 설치기준을 초과하여 주차장을 설치할 때에는 규칙 제5조제5호 내지 제7호의 규정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기존의 주차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주차장은 이 고시에 의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 본다.